

仁祖 즉위 이후 권력장악과 인목대비의 위상

김 한 신*

국문초록

인조는 거사 직후 즉위 과정에서부터 인목대비의 지지를 얻어 권력장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먼저 인조는 인목대비와 명 황제에게서 책봉을 받아야만 했다. 명 황제로부터 받는 책봉에서조차 인조는 인목대비의 공식적인 奏請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즉위 이후 인조는 광해군 10년(1618)에 있었던 폐모논의를 기준으로 인사 및 처벌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간접적으로 인목대비의 명예를 復權하는 일이기도 했다. 인조는 인목대비의 지위를 회복함으로써 곧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려 했다. 인조는 거사는 물론 즉위 이후의 통치과정에서 인목대비와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권력의 입지를 견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주제어] 인조, 인목대비, 인조반정, 즉위과정, 폐모론, 인목대비 복위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復位 이후 인목대비의 조정 내 권력행위 |
| II. ‘반정’ 당시 인목대비의 역할 | V. 맺음말 |
| III. 인목대비를 통한 ‘반정’의 정당성 확보 | |

I. 머리말

仁祖는 ‘반정’의 성공 이후 仁穆大妃로부터 冊命을 받아 즉위할 수 있었다. 인조는 인척관계에 있는 申景禎·具宏 등을 끌어들이고, 李貴·金鑾·李曙 등과 합세하여 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군사를 최대한 모아, 거사 당일에 광해군이 머물고 있는 正宮 昌德宮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그러나 그는 繼陽 君으로서 정상적인 왕위계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왕실의 일원에 지나지 않았고, 민심과 사대부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그가 무력만으로 곧바로 즉위할 경우 이는 자칫 찬탈로 보일 수 있었다. 그렇게 된다면 광해군

*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 pinetigri@hanmail.net

을 축출하는 데에는 성공했는지라도 현재의 국왕에 모반을 일으킨 주동자로서 또 다른 討逆의 대상이 될 뿐이었다. 인조가 명실 공히 국왕으로서 위상을 굳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상징적인 권위에 가탁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인목대비였다.

인조는 ‘반정’을 단행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李爾瞻이 임금을 현혹시켜 권력을 멋대로 휘두르고 모자지간인 대비와 임금을 이간한 점, 인목대비를 西宮에 가두어 수모를 가한 점, 명의 은혜를 저버린 점, 사치가 도에 넘치고 형벌이 문란하여 백성들이 곤궁하게 되었다는 점 등이었다. 이 중에서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하여 수모를 가한 일은 ‘인륜의 變’으로 규정되었다.¹⁾ 바로 廢母論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인조가 ‘바른 질서’를 회복한다는 ‘大義’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폐모론의 해결이 선결과제였다.

폐모론의 처리는 ‘반정’의 정당성을 천명하고, 국왕 인조가 인목대비를 자신의 편에 서게 하여 거사 이후 자신에게 생길 수 있는 의구심을 희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치행위였다. 이로써 인조는 ‘慈殿’을 복위시키고 ‘昏君’의 죄를 징벌한 국왕으로서 도덕적 권위가 높아지게 되었다. 인조에게 인목대비는 즉위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의 정국운영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국왕의 권위와 권력을 뒷받침해주는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인목대비는 그 자신대로 ‘반정’ 이후 급변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인조정권의 이러한 점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인목대비를 대체로 ‘반정’의 명분과 관련하여 다루었다. 인조대의 주요 정치세력을 다룬 연구에서는 숙청과 등용작업이 진행될 때에, 일차적으로 폐모론이 기준이 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²⁾ 인조의 왕위계승문제를 분석하는 연구에서는 인목대비가 왕대비 교서 등으로 ‘반정’을 합리화시켜준 존재로 제시되었다.³⁾ 인목대비의 복위가 ‘반정’의 당위로서 중시되었던 사실과 인조의 정통성 문제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인목대비를 위한 존숭사업이 추진되었다는 점에 주목한 연구도 있었다.⁴⁾ 이와 같은 내용들이 논증됨으로써 ‘반정’ 당시에 중시된 인목대비의 위상과 권한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인조와 인목대비 사이의 입장차이와 갈등에 주목한 연구도 있었다.⁵⁾ 이상의 연구들에서는 ‘반정’ 직후 인목대비의 복위와 폐모론의 처리과정을 제시했으나, 이후 인조가 정국을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중시한 인목대비의 위상을 함께 검토하지 못했다.

광해군대와 인조대의 대외관계를 다루는 연구에서는 ‘반정’ 당시 책명을 내려주고, 책봉주청문을 보낸 인목대비의 역할과 ‘廢母殺弟’의 당사자로서 의미가 서술되었다.⁶⁾ 대외관계와 관련하여, ‘인조반정’의 명분에서 사대의리의 중요성을 논하고 폐모론과의 비교를 제시한 연구도 있었다.⁷⁾ 이러한 경향의 연구들에서는 당시 조선의 대외관계에서 ‘반정’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검토하고, 대내·대외관계에서 인목대비와 폐모론이 논의

1) 『仁祖實錄』 卷1, 元年 3月 甲辰(14日), “賊臣爾瞻惑君心, 圖竊國柄, 仍構母子之隙, 竟成彝倫之變, 出廢別宮 辱辱備至.”

2) 吳洙彰, 「仁祖代 政治勢力의 動向」, 『韓國史論』 13,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85.

3) 李迎春, 『朝鮮後期 王位繼承 研究』, 集文堂, 1998.

4) 申炳周, 「仁祖代 ‘豊呈’儀式的 추진과 관련 儀軌 연구」, 『韓國學報』 114, 일지사, 2004.

5) 김인숙, 「인조대의 궁중저주사건과 그 정치적 의미」, 『朝鮮時代史學報』 31, 朝鮮時代史學會, 2004; 「인조 경운궁 즉위의 정치적 의미」, 『韓國人物史研究』 15, 韓國人物史研究所, 2011.

6) 한명기, 『광해군-탁월한 외교정책을 펼친 군주』, 역사비평사, 2000.

7) 계승범, 「계해정변(인조반정)의 명분과 그 인식의 변화」, 『南冥學研究』 26, 慶尙大學校 慶南文化研究院 南冥學研究所, 2008.

되는 상황에 주목했다. 다만 광해군대와 인조대의 對明關係를 비교·대조하고 그 의미를 밝히는 것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인목대비라는 존재가 인조에게 가지는 의미와 정국에서의 영향력까지 진전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거사 이후 인조와 인목대비의 상호관계가 본격적으로 논증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조는 정식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광해군을 축출하여 즉위한 까닭에 국왕의 統緒와 자격이 거사 이후의 현안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殷鑑不遠” 등 어구의 인용으로 인조 역시 다른 세력에 반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거나, ‘반정공신’과 외척의 권력독점에 표명된 우려 등은 인조가 즉위한 방식과 그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악영향에 관해 형성된 공론 중 하나였다. 이는 군사체계를 장악하고 정적을 차단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었다. 인조 자신의 권위와 자질이 보완되고 안정되어야 했으며, 그 때문에 즉위 직후부터 先王 즉 宣祖와 선조의 妃인 인목대비로부터 자신의 결핍을 메우려 했던 것이다.

인목대비는 울분과 원한에 가득찬 궁중의 여인일 뿐이었을까? 만약 인목대비가 광해군대를 거치면서 광해군과 그의 치세에 원한을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를 당대 정치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綾陽君(인조) 또한 동생 綾昌君이 옥사로 사망한 이후 광해군에게 반감을 가지기 시작했다. 능양군은 군사를 움직여 광해군을 폐위했고 인목대비는 그러한 군사력이 없어 양쪽의 경우는 다르다고 말한다면 이 역시 권력을 지나치게 물리력 일변도로만 해석한 것이다. 당일 거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론이 이를 부인하면 능양군과 이귀·김류 등은 역적이 될 수밖에 없다.⁸⁾ 이는 인목대비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의 거취가 국가권력의 정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의 거취는 다시 政局에 영향을 미치는 士林의 반응을 이끌어낸다든 점에서 권력행위로 귀결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반정’ 이후 새롭게 권력의지를 다지고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인조와, 자신의 권위가 국왕 인조에게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잘 알고 이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는 데에 활용하려는 인목대비와의 긴장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폐모론은 이러한 인조와 인목대비의 정치적 제휴를 가능하게 해 주는 연결고리였다.

둘째, 인조가 민심을 수습하고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었다. 이는 명의 책봉이 끝나는 시점인 재위 3년(1625)까지의 위기상황과 맞물려 있다. ‘반정’이라는 방식으로 즉위했던 만큼, 인조는 민심의 이반을 막고 반대세력의 저항에 어떠한 형태로든 대비책을 강구해야만 했다.⁹⁾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은 인조의 책봉이 끝나는 시점까지 이어졌는데, 이러한 시기에 인목대비는 인조가 조속히 권력기반을 다지고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존재였던 것이다.

이 글에서 중점을 두고 보아야 하는 대목은 즉위 이후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해야 하는 인조와 先王의 왕비인 인목대비와의 관계이다. 인목대비는 능양군의 거사로 幽閉로부터 이제 막 벗어나, 宣祖의 비로서 왕실과

8) 당시 능양군의 거사와 공론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薛錫圭, 『朝鮮時代 儒生上疏와 公論政治』, 도서출판 선인, 2002, 206~209쪽, 참고.

9) 반정직후 인조대 정국의 불안정한 상황은 金容欽, 『朝鮮後期 政治史研究-仁祖代 政治論의 分化와 變通論』 I, 해안, 2006, 83~95쪽 참고.

조정 의 존승을 받으려 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생각하는 ‘復權’이었기 때문이다. 인조의 입장에서는 한 때 거사에 성공했다고 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부터 문제는 시작이었고, 이후의 문제들을 안정적으로 풀기 위해서 인목대비가 자신 쪽에 서 주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한 인목대비가 인조의 요구에 순순히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인조의 권위와 권한 위에 올라서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 하는 과정에서 인조의 권력행사에 예상치 못한 균열을 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인조는 난제에서 벗어나기는커녕 또 다른 난제를 짊어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형세를 만약 누가 주도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본문에서 누구를 일관된 주어로 정해야 하는가에 매달리다 보면 기계적인 서술에 그치고 말 것이다. 관건은 ‘관계’에 입각하여 양자의 의도와 요구에 따라 상호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피는 데 있다. 본문의 목차 역시 한 인물에 고정해서 능양군의 거사와 그 이후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과 인물이 빚어내는 시대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보다 진전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가 미치는 시기 역시 인목대비의 위상이 인조대 내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연도를 특정하기보다 ‘인조 즉위 이후’라는 시점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사실을 유연하게 해체 및 재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대체로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형성된 인조와 인목대비의 관계가 이후 시기로 면면히 이어진다는 사실을 살펴볼 때 이 같은 방법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논문의 말미에 배치한 <부도 1> 인목대비 관계도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과 연관된다. 이에 인조가 즉위하는 과정에서 인목대비의 지지를 어떻게 이끌어 내고 어떤 측면으로 활용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하며, 그에 따라 이 논문이 인조가 ‘반정’ 직후 구축한 권력기반과 그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기여하리라고 생각된다.

II. ‘반정’ 당시 인목대비의 역할

綾陽君은 光海君 15년(1623) 3월, 長湍으로부터 온 李曙의 군사를 맞이하고 弘濟院에서 李貴, 沈器遠 등의 군사와 합세하여 彰義門으로 향했다. 창의문을 통과한 뒤 昌德宮으로 향했는데, 訓練大將 李興立과 哨官 李沆 등의 내용으로 별다른 저항 없이 진입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承旨 朴弘道와, 兵曹參判 朴鼎吉 등을 제거했다. 광해군은 의관 安國臣의 집에 숨어 있다가 붙잡혀 왔고, 세자 李祘도 莊義洞 민가에 숨어 있다가 군사들에게 붙잡혔다.

그 뒤 능양군이 유폐된 仁穆大妃에게 李時昉과 金自點 등을 보내 ‘반정’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했다.¹⁰⁾ 처음부터 인목대비는 이를 신뢰하지 않고, “승지와 史官도 없이 알리러 왔느냐”며 이시방 등의 정체를 물었다. 능양군은 이를 듣고 재차 사람을 보내 昌德宮으로 와줄 것을 청했으나, 인목대비는 응하지 않았다.

능양군이 거둬 사람을 보낸 것은 인목대비의 권위를 통해 冊命을 받고자 했기 때문이다.¹¹⁾ 능양군은 宣祖

10) 『仁祖實錄』 卷1, 元年 3月 癸卯(13日), “上初入宮, 卽送金自點李時昉, 啓達反正之意于王大妃.”

11) 능양군은 이미 御寶를 후원에서 습득한 상태였다. 『光海君日記』 卷187, 光海君 15年 3月 癸卯(13日), “癸卯黎明, 收御寶,

의 왕자가 아니라 손자였기 때문에 왕위승계 순서로 보면 적임자가 아니었다. ‘반정’에 성공하더라도 누가 자기편이며 누가 자신에게 반기를 들지 불분명했고, 또 다른 정변의 가능성도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조는 대비의 윤험을 통해서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했던 것이다. 인목대비로부터 책명을 받는 일이 단순히 형식적인 즉위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능양군에게는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아야 하는 과제도 있었다.¹²⁾ 천자인 명 황제의 책봉을 받지 못할 경우, 內政에서도 국왕으로서 권위가 손상될 수밖에 없었다. 능양군은 명의 책봉을 받기 위해서 ‘昭敬王妃’인 인목대비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¹³⁾ 인목대비도 “天朝(明)의 명이 없으니 어찌 正位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마땅히 權署國事라 해야 할 것이다”¹⁴⁾라고 말할 정도였다. 권서국사는 국왕 有故時 임시로 국가사를 주관하는 정치지도자이다. 능양군이 정식 군주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반정’으로 즉위하는 상황에서, 인목대비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능양군에게 여러 측면에서 필요한 조건이었다.¹⁵⁾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반정’을 계획할 때에도 능양군이 당일에 인목대비에게 직접 찾아가 거사의 당위를 설득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李賁는 “주상이 친히 西宮에 찾아가서 學義한 연유를 아뢰고 자전을 받들어 창덕궁에 모셔서 坤極을 바르게 하고, 자전으로 하여금 광해군을 불러다 놓고 數罪하게 하기를 昌邑王의 고사와 같이 한 뒤에야 명분이 바르게 되고 말이 순해질 것”이라고 했다.¹⁶⁾

이귀의 주장은 거사 당일에 가장 중요한 일은 능양군이 직접 인목대비를 찾아가서 설득한 후, ‘서궁’으로부터 복위시켜 광해군의 폐위를 주재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명분이 바르게 되고 말이 순해질 것”이라고 한 것은 광해군을 폐위시킴으로써 생길 수 있는 반발을 염두에 둔 언급인데, 인목대비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새를 갖추 수 있다면 상황이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반정’ 이후의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능양군이 인목대비의 권위에 기댈 필요가 있다는 이귀의 의견이었다.

그러나 이 의견은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그 결과 당일에 능양군의 명으로 몇 차례 사람이 가서 인목대비를 창덕궁으로 이동시키려 했으나 번번이 거부당했다. 능양군은 ‘반정’을 성공시켰다는 성취감에 즉위절차에는 별도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는지 모른다.¹⁷⁾ 그렇지만 인

軍人得於苑中以獻.” 그럼에도 인목대비를 창덕궁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어려워지자 직접 경운궁에 가서 대비의 즉위책명을 늦게까지 기다린 것을 보면 스스로 즉위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명으로부터의 책봉과정은 이영춘, 『仁祖反正 후에 파견된 冊封奏請使의 記錄과 외교 활동』, 『朝鮮時代史學報』 59, 朝鮮時代史學會, 2011 참고.

13) 이와 관련하여 중종의 책봉사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중종은 반정 후 2년(1507)에 右贊成 盧公弼과 知中樞府事 尹珣을 冊封奏請使로 명에 보냈는데, 명의 禮部에서는 중종을 단지 權署國事로만 인정하고 母妃의 주청을 받고 나서 책봉해 줄 수 있다는 자문을 보내왔다. 『中宗實錄』 卷3, 2年 8月 癸巳(22日) 이에 康靖王妃의 주청문을 다시 보내서 이듬해에 책봉을 準許 받았다. 『中宗實錄』 卷5, 3年 2月 丙戌(18日) 인조와 ‘반정’세력도 이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14) 『仁祖實錄』 卷1, 元年 3月 癸卯(13日), “慈殿曰,……且無天朝之命, 何以正位, 宜權署國事.”

15) 인목대비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이전 시기인 광해군대에도 작용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懷慶運宮詩』에서는 부당하게 고초를 당하는 왕비로, 거사를 거론하는 檄文에서는 불만세력을 결집시키는 구심점으로 나타났다(『光海君日記』 卷111, 9年 1月 丙子(10日); 『光海君日記』 卷111, 9年 1月 丙戌(20日)).

16) 『默齋日記』 1, 反正時事, “蓋於學義之初, 公與同事之人, 會于崔鳴吉家, 議定諸事之際, 公先言曰,……而主上率若干義兵, 及興立之軍, 親往西宮, 面陳學義之由, 請奉慈殿往幸昌德宮, 正位坤極, 而以慈殿招光海數罪, 廢之如昌邑故事, 然後名正言順矣. 其時一種之議, 以爲迂闊而不從.”(민족문화추진회, 2012, 12쪽) 漢代 창읍왕은 霍光의 도움으로 황제로 즉위했다가, 先皇帝인 昭帝의 제사 기간에 무례한 행동을 했다고 하여 太后인 孝昭皇后的 명으로 폐위된 인물이다.

목대비의 뜻이 완강하다는 것을 알고, 결국 능양군이 창덕궁에서 경운궁으로 움직였다.¹⁸⁾ 이 때 광해군도 대동하여, 그를 폐위시키고 인목대비를 유폐된 상황으로부터 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인목대비의 의심을 완전히 풀어주기 위해서였다.

결과적으로는 이귀가 제안한 바대로 된 셈인데 여기에는 인목대비가 ‘반정’에 쉽게 호응해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 때문에 능양군이 경운궁으로 움직이게 된 것이었다. 경운궁에 들어서서 능양군은 인목대비에게 문안하고 대죄했다. 인목대비는 그 뒤에도 傳國寶를 맡아두겠다는 등의 언사로 계속 시간을 지체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그 때문에 시간이 꽤 지나야 능양군은 正殿 昌德宮이 아닌 경운궁에서 늦은 밤에 즉위할 수 있었다.¹⁹⁾ 이를 통해 미루어 볼 때, 인목대비는 능양군에게 책명을 내리면서 자신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과 권한을 최대한 드러내려 했던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능양군에서 국왕이 된 인조에게 인목대비의 상징성이란 곧, 廢主 이전의 선왕인 宣祖의 왕비라는 점이었다. 이는 인목대비가 선조의 권위를 대신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인목대비를 예우함으로써 인조는 자신이 선조의 종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목대비에게 해를 끼친 광해군이야말로 선조에게 죄를 저지른 폐주라는 점이 널리 알려져야 했다. 인목대비의 이름으로 작성된 교서와 책봉주청문을 매개로 해서 이러한 작업이 자연스럽게 수행될 수가 있었다.

인목대비는 이미 諱書로 광해군의 죄를 열 가지로 열거하여 광해군을 폐위하는 절차를 주도했다.²⁰⁾ 물론 인조 측에서도 거사의 일환으로 광해군의 죄를 공포할 준비를 했으리라 생각되지만 『仁祖實錄』에서 언서라는 형식과 그 내용의 구성을 볼 때 인목대비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긴 시간 유폐되었으나 마침내 擧事가 일어난 것을 깨닫게 되었고 대비로서 왕실의 정점에서 광해군을 폐하고 새로운 임금의 즉위를 승인했던 것이다.

인목대비 명의의 교서와 책봉주청문은 인목대비의 의사와 무관하게 인조 측에서 미리 준비한 내용인가? 물론 有故가 있을 때 조선에서는 대비가 즉위를 승인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능양군이 아직 즉위하지 않았을 때를 살펴보면 능양군은 인목대비의 승인을 형식적인 절차 정도로 생각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인목대비에게 사람을 보내면 단순히 창덕궁으로 와서 자신의 즉위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결과는 인목대비가 인조의 뜻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 쪽이었다. 자신이 공식적으로 광해군의 처벌을 주도하려 했던 것이다. 인목대비는 능양군의 거사를 분명히 인지한 후, 광해군을 죽여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²¹⁾ 인조는 이미 즉위했음에도 인목대비의 조치를 따르는 모양새를 취해야 했다.²²⁾ 인목대비가 단순히 인

17) 김인숙, 「인조 경운궁 즉위의 정치적 의미」, 『韓國人物史研究』 15, 韓國人物史研究所, 2011, 199~200쪽.

18) 『仁祖實錄』 卷1, 仁祖 元年 3月 癸卯(13日), “上乃命大將李貴都承旨李德洞同副承旨閔聖微等, 備儀仗, 往請奉迎, 李貴等詣慶運宮, 陳啓事狀, 屢請奉往, 大妃不許, 上乃親詣慶運宮.”

19) 『仁祖實錄』 卷1, 仁祖 元年 3月 癸卯(13日), “德洞曰, 嗣君入內, 夜將朝矣, 尙未即位. ……上起拜出即位于別堂.”

20) 『仁祖實錄』 卷1, 仁祖 元年 3月 甲辰(14日), “諸大將請上, 先率百官, 陳賀于慈殿後, 受百官賀, 慈殿以諱書, 數廢君十罪.”

21) 『仁祖實錄』 卷1, 仁祖 元年 3月 甲辰(14日), “仍下教曰, 非但告廟之禮, 時未舉行, 父母之讎, 亦未及誅, 豈可以白衣受賀, 其勿陳賀.”

22) 『仁祖實錄』 卷1, 仁祖 元年 3月 乙巳(15日), “慈殿下教曰, 逆魁瑁, 當稟達于天子, 以待處置, 其父子, 姑爲極邊安置. ……禮曹啓曰, 廢君處置之舉, 宜依慈殿下教, 令禁府察而行之, 奏文令承文院參商撰出, 俾無未盡之意. 上從之.”

조 등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인조가 즉위할 당시에 작성된 책명교서와 책봉주청문에는 공통적으로 광해군이 인목대비와 왕실에 끼친 ‘패륜’이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광해군의 ‘폐정’이 나열되었다. 책명교서와 책봉주청문 양쪽 문서에서는 형식뿐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인목대비의 입장에서 광해군의 ‘패륜’을 준엄하게 고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인목대비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광해군을 폐위하고 인조에게 책명을 내린 일이 대비의 자발적인 결정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였다. 인목대비는 책명을 내리는 교서에서 광해군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宣祖大王께서 불행하게도 嫡嗣가 없어 한 때의 권도에 따라 나이의 순서를 뛰어넘어 광해를 세자로 삼았다. 시간이 지나 동궁에 있을 때 허물이 크게 드러나 선조의 만년에 자못 후회가 있었고……내가 아무리 덕이 부족하더라도 천자의 誥命을 받아 선왕의 배필이 되어 일국의 국모 노릇을 한 지 여러 해가 되었으니 선조의 아들이라면 나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광해는 남을 참소하고 모해하는 자들의 말을 믿어 스스로 시기하는 마음을 만들어, 우리 부모에게 형록을 가하고 우리 일가붙이를 어육으로 만들었으며 품속에 있는 어린 아들을 빼앗아 죽이고 나를 유폐하여 곤욕을 치르게 하였으니, 그는 인간의 도리가 조금도 없는 자이다. 그가 이러한 것을 한 것은 선왕에게 품었던 유감을 풀려고 한 것인데 미망인에 대해서야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그는 형과 아우를 살해하고 조카들을 모조리 죽였으며 庶母를 때려죽이기까지 하였다.²³⁾

宣祖가 적자가 없어서 광해군을 세자로 삼았고, 이미 동궁시절부터 선조가 광해군에게 실망하고 있었다는 요지이다. 이어서 자신이 先王의 왕비가 되었고 천자로부터 책봉을 받아 母子의 의리가 있는데도, 광해군이 인목대비 자신의 부모와 인척, 어린 아들까지 죽이고 자신을 유폐했다고 서술했다. 광해군은 애당초부터 자격이 없는데도 국왕이 되어,²⁴⁾ 明의 책봉을 받은 先王의 왕비인 자신을 유폐하고 가문을 망쳐놓았다는 내용이다.

책봉주청문에서는 ‘패륜’이 더욱 강조되었다.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자결하도록 압박하였으며, 군사를 경운궁으로 난입시키거나 무당으로 하여금 저주하게 했다는 내용과 선조의 후궁들과 간통하기도 하고 혹은 그들을 죽이기도 했다는 내용까지 더해졌다. 그리하여 책봉주청문에서는 광해군을 隋煬帝 楊廣에 비교하기까지 했다. 책명을 내리는 교서와 비교해 보면, 부왕인 선조에게 ‘패륜’을 저지르기까지 했다는 내용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⁵⁾

23) 『光海君日記』 卷187, 光海君 15年 3月 甲辰(14日), “昭聖貞懿王大妃若曰,……宣祖大王, 不幸無適嗣, 因一時之權, 越長少之序, 以光海爲儲貳, 既在春宮, 失德彰著, 宣祖晚節, 頗有悔恨,……刑戮我父母, 魚肉我宗族, 懷中孺子, 奪而殺之, 幽廢困辱, 無復人理, 是蓋違憾於先王, 又何有於未亡人. 至戕兄殺弟, 屠滅諸姪, 擄殺庶母.”

24) 관련내용은 李迎春, 『朝鮮後期 王位繼承 研究』, 集文堂, 1998, 138~139쪽 참고.

25) 『明倫錄』은 광해군의 즉위와 그 뒤에 일어난 옥사들, 폐모논의 등에 관한 上疏, 劄子, 전교 등을 모아놓은 자료이다. 편년체로 되어 있으며 편집자의 의견이 덧붙여져 있지 않다. 광해군의 인목대비에 대한 ‘패륜’을 밝히기 위해 이 책을 편찬했다는 약점이 있지만, 그러한 점에 주의하면서 사실관계를 판단해 나간다면 광해군대의 정국동향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하리라고 생각된다. 판본은 驪江出版社에서 1990년에 朝鮮黨爭關係資料集으로 영인한 필사본이다. 『明倫錄』 卷6, 朝鮮黨爭關係資料

다음으로는 책명교서와 책봉주청문에 모두 광해군의 ‘弊政’이 서술되었는데, 선왕의 유지에 어긋난다는 평가가 더해졌다. 책명을 내리는 교서에서는 선왕의 원로대신을 축출한 점과 선왕이 명을 지극하게 섬겼음에도 광해군은 명을 배신하고 三韓이 夷狄의 나라가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하게 한 점 등이 중요한 부분으로서 제시되었다.²⁶⁾ 책봉주청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조가 지성으로 명을 섬겼는데 광해군은 오랑캐와 통교하고 화친했다고 하면서, 1621년(광해군 13, 신유년)에는 모문룡을 결박하여 적에게 넘겨주려 하는 등 상세한 부분까지 적시했다. 이러한 내용들을 광해군의 다른 과오와 결합하여 폐위가 불가피했다는 이유로 삼았다.

반면 인조는 책명을 내리는 교서에서 광해군대의 혼란을 평정하고, 인목대비를 오랜 유폐로부터 구해준 인물로 서술되었다.²⁷⁾ 명에 보내는 책봉주청문에서는 인조가 여러 신민들에게 추대되어 내정의 어지러움을 다스려 바른 질서를 회복시켰다는 공적이 제시되었다. 인목대비는 인조의 位號가 빨리 정해져야 인심이 흔들리지 않고 오랑캐를 막을 방어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덧붙였다.²⁸⁾ 명과도 관련이 있는 대외관계를 언급함으로써 인조의 책봉이 시급함을 강조했던 것이다.

폐주 이전의 선왕인 선조의 왕비로서 인목대비는 인조에게 중요한 인물이었다. 즉위하는 순간에는 인목대비의 책명이 필요했고,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는 절차에서도 ‘소경왕비’로서 대비의 주청문이 있어야 했다. 인조는 인목대비를 통해서 광해군이 선조의 종통을 계승할 수 없는 폐주라는 점을 밝힐 수 있었다. 인목대비의 승인과 주장 아래 이러한 내용들이 작성되고 대내외에 선포되었다는 점이 이 시점을 파악할 때 핵심이 된다.

사실 인목대비가 조정 내의 논의에 자신의 뜻을 반영하려 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인목대비는 광해군이 즉위한 이후 선조의 廟號를 정할 때 宗系辨誣와 전쟁을 극복한 점을 들어 創業之主에 해당하는 묘호를 쓸 것을 요청했다.²⁹⁾ 다시 말해 ‘宣宗’이 아닌 ‘宣祖’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조정에서는 이항복, 이원익 등이 ‘宗’을 쓰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었다.³⁰⁾ 인목대비 역시 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수차례 광해군에게 ‘祖’를 써야 한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다.³¹⁾ 이미 이 시기에도 인목대비는 조정의 주요한 사안에 자신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리라 보았던 것이다.

集 4, 1990, 243쪽, “朝鮮國昭敬王妃金氏, 謹奏爲, 獨夫自絕于天, 懇乞聖明特降嗣孫冊號, 以安宗社, 固藩邦事. 妾竊照先臣昭敬王, 不幸無嫡嗣以已, 故妾金氏出光海君璵, 請爲承襲節次陳奏, 欽蒙朝廷特允奉典, 而嗣位以來反道倍德, 積失人心, 妾尋常戒告, 庶幾懲毖, 而聽信讒言, 自生猜貳, 不以子道事妾, 刑戮我父母, 魚肉我兄弟, 虐殺我孺子, ……原其罪惡, 浮於楊廣矣.”

26) 『光海君日記』 卷187, 15年 3月 甲辰(14日), “壬辰再造之惠, 萬世不可忘也, 先王臨御四十年, 至誠事大, 平生未嘗背西而坐, 光海忘恩背德, 罔畏天命, 陰懷貳心, 輸款奴夷, 已未征虜之役, 密教帥臣, 觀變向背, 卒致全帥, 師投虜, 流離四海, 王人之來我國, 拘囚羈繫, 不啻牢狴, 皇勳屢降, 無意濟師, 使我三韓禮義之邦, 不免夷狄禽獸之歸, 痛心疾首, 胡可勝言.”

27) 『光海君日記』 卷187, 15年 3月 甲辰(14日), “綏陽君某, 宣祖大王之孫定遠君某第一子也, ……今者奮發大義, 討平昏亂, 脫予囚辱, 復予位號, 倫紀得正, 宗社再安, 功德甚懋, 神人所歸, 可卽大位, 以繼宣祖大王之後, 冊夫人韓氏爲王妃, 故茲教示, 想宜知悉.”

28) 『明倫錄』 卷6, 朝鮮黨爭關係資料集 4, 1990, 244쪽, “仍竊伏念, 小邦南有島夷, 北連山戎, 西接奴賊地方, 內亂雖靖, 外憂方急, 嗣孫位號必須早定然後, 人心不擾, 戰守有方, 欽惟聖上明見萬里, 乞將見奏內情節, 曲垂睿諒, 特準襲封之請, 誕頒冊立之典.”

29) 『서궁일기』 상, 홍기원(편), 민속원, 2004, 96쪽 “대왕 묘호 홍을적 우히 니르오시디 임진왜란의 등홍지공은 니르읍디 말너니와, 조종망극 피무 기종지공은 막대히니 창업지주의서 써디시릿이가 묘호를 헤아려 심상이 마르쇼서”

30) 『光海君日記』 卷1, 光海君 卽位年 2月 甲戌(17日)

31) 『서궁일기』 상, 홍기원(편), 민속원, 2004, 98쪽 “우희 의논호오시고 다시올 기유호오서 여러번 니르오시디 므츨내 듯디 아니호고 종족을 가지셔도 못디 아니 하니이다 하니 그 불효호를 가히 알디라”

Ⅲ. 인목대비를 통한 ‘반정’의 정당성 확보

즉위의 예를 치른 뒤, 인조는 한편으로는 광해군대 집권세력을 축출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조정을 구성하기 위해 적절한 인물을 초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인조에게 이전 세력을 쫓아내고 조정을 다시 새로운 세력으로 채워야 하는 과제가 생긴 것이다. 이 일은 앞으로 인조가 어떤 인물과 세력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통치를 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다. 이 작업을 거쳐 국왕의 측근인물 중심으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런데 처벌과 등용을 단순히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대비의 책명을 받기는 했지만 ‘반정’의 정당성이 책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광해군대와의 차별성을 보여야 했고, 政事를 통해서 그에 걸맞은 실제 면모를 보일 수 있어야 했다. 처벌과 등용은 실재를 보여 줄 수 있는 첫 단계였다. 여기에는 일정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했다. 그 기준 중 하나가 폐모론이었다.

처벌에서는 폐모론을 중심으로 ‘元兇’이 설정되고 원흉이 저질렀던 그 밖의 죄가 널리 알려졌다. 등용에서는 ‘선조대의 舊臣’들이 우선적으로 초치되었는데, 이들은 대개 폐모론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李元翼, 鄭昌衍, 尹昉, 申鉉 등이 바로 그러했다.³²⁾ 다시 말해 처벌과 등용 두 측면에서 폐모론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원칙을 인조는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³³⁾

인목대비도 “마땅히 유희분과 이이첨을 친국한 뒤에 책명을 내릴 수 있다”³⁴⁾라고 하거나, 영의정 이원익에게 “경이 冤婦를 위해 직언하다가 죄에 걸려 쫓겨났으니 경의 충정은 가히 해를 꿰뚫는다고 하겠다”³⁵⁾라고 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처벌할 인물과 영입할 인물을 두고 자신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치들에는 폐모론이 일어날 즈음 ‘西宮’으로 격하되었던 인목대비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즉 존호 및 칭호의 회복과 같은 본격적인 절차 이전에, 인목대비를 두고 일어난 폐모론이 부당한 것이었으며 그에 따라 모든 상황을 인목대비가 폐모론으로 인하여 수모를 겪기 이전으로 돌려놓는다는 의미에서 이 일들을 보여준 것이다. 처벌과 등용을 시행할 때 제시되었던 교서, 상소 등 개별사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은 처벌과정에서 그러한 점들을 살펴보려 한다. 인조는 3월 안에 이이첨, 정인홍 등의 신병을 확보하게 했다. 별다른 국문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이이첨과 두 아들, 그리고 鄭造, 尹誦, 李偉卿 등을 3월 19일에

32) 이와 관련하여 계속옥사, 무오정청 등 사건에서 대두된 全恩論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송양섭, 「17세기 전반기 梧里 李元翼의 정치활동과 정책구상」, 『韓國人物史研究』 5, 한국인물사연구소, 2006, 202~209쪽 참고.

33) 오수창은 ‘반정’의 주역들이 폐모론을 기준으로 숙청과 등용작업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본문에서는 처벌과 등용과정에서 폐모론이 중시되는 원인을 인조가 실제 政事에서 광해군대와 차별성을 보이고, 실질적으로 인목대비의 명예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으로 논증하고자 한다(吳洙彰, 「仁祖代 政治勢力的 動向」, 『韓國史論』 13,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85, 56쪽).

34) 『光海君日記』 卷187, 15年 3月 癸卯(13日), “大妃又教曰, 當親鞫柳希奮李爾瞻, 然後當有策命.”

35) 『仁祖實錄』 卷1, 元年 3月 癸丑(23日), “又下教于領相李元翼曰, 卿曾爲冤婦直言, 遭罹罪黜, 卿之忠貞, 可謂貫日矣.”

함께 처형했다.³⁶⁾ 그 다음은 정인홍을 처단하는 일이었다.

정인홍을 처단하는 일은 賓廳會議를 거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빈청회의에서는 정인홍이 이이첨을 부추기고 폐모론을 담당했으며, 이는 이이첨의 죄만큼이나 심각하다고 했다. 영창대군을 비하한 말은 先王까지도 욕되게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와 함께 정인홍이 정형을 받지 못하고 곧 죽을 염려가 있으니 죄를 주어야 한다고 건의했다.³⁷⁾ 인조는 의금부에 전교를 내려서 백관이 늘어선 가운데 정인홍을 처형하라고 직접 전교하였고,³⁸⁾ 정인홍은 4월 3일에 처형되었다.

인조는 4월 3일에 정인홍을 처형하면서 교서를 내려 자신이 ‘반정’을 단행한 이유를 밝히고, 이이첨, 정인홍, 韓纘男, 정조, 윤인, 이위경 등의 죄를 명시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이첨과 정조, 윤인, 이위경 등은 3월 19일에 처형되었다. 한찬남은 3월 14일에 처형되었다. 이미 이이첨 등의 시신은 효시하여 사방에서 둘러보게 했음에도, 인조는 4월 3일에 정인홍을 처형하면서 정인홍의 시신과 함께 이이첨 등의 시신을 다시 둘러보게 했다.

인조가 이들을 처벌하며 내세운 논리는 곧 자신이 거사를 일으켜 즉위한 근거로 제시되었다. 그 근거의 핵심이 광해군대의 폐모론과 인목대비의 명예회복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교서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인조는 앞부분에서 자신이 천지와 祖宗의 도움에 힘입어서 내란을 평정하고, 인목대비를 받들어서 악한 자들을 배어 버렸다고 자처했다. 천명을 받아 ‘반정’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인조는 ‘반정’을 단행하여 종묘사직이 다시 편안하게 되었고, 인륜이 회복되었다고 했다.³⁹⁾

교서의 본 내용에는 처형된 인물들의 죄가 제시되었다. 이이첨은 간신의 후예인 데다가 원로와 정승을 조정에서 쫓아내고 昏君을 현혹시킨 인물로 서술되었다. 조정에서 폐모론을 사주할 때 신하들을 위협하고 이익으로써 유혹했으며, 漢과 唐 시대의 폐출사례를 들어서 신하로서 국모를 ‘數罪’하면서 10여년간 유폐시킨 죄를 언급하여 이이첨이 죽어 마땅한 자임을 밝혔다.

정인홍에게는 다음과 같은 죄목이 적용되었다. 영창대군을 “우리 속의 돼지”라고 하며 모욕한 점, 인목대비의 폐위를 거론하면서 明에는 나중에 알리자고 한 점, 인목대비를 춘추시대의 哀姜과 文姜에 빗대면서 불공대천의 원수라고 하여 유폐되게 하는 데에 결정적인 원인제공을 했다고 한 점 등을 다른 죄와 함께 제시했다. 그리하여 강상과 인륜을 무너뜨리게 만든 책임이 바로 정인홍에게 있다고 명백히 밝혔다. 인조는 교서에

36) 『仁祖實錄』卷1, 元年 3月 己酉(19日), “李爾瞻鄭造尹詔李偉卿李弘燁李益燁伏誅.”

37) 『推案及鞫案』卷2, 癸亥三月以後獄事 上 癸亥 4月 初2日, 아세아문화사, 1983, 44~45쪽, “賓廳坐起, 刑房承旨, 閔聖徵啓曰, 禁府囚徒多至百餘, 省鞠之停已過八日, 罪重者, 假息, 則無以洩神人之憤, 罪輕者久囚則, 未免有滯獄之患. 前者屢下欽恤之教者, 誠以此也, 卽朝還宮後, 大臣有司會於賓廳, 議罪者, 卽爲議啓, 捧招者, 則今日內省鞠爲之急速處決宜當. 且鄭仁弘之託迹山林, 盜名濁世, 侮辱先賢, 戕害士林, 濁亂朝政, 武斷鄉曲, 特其餘事, 爲賊臣爾瞻等之謀主, 擔當廢母之論, 至比永昌於圈中豮豕, 辱及先王, 其窮天極地之罪, 惡小無減於爾瞻, 而拿來三日保首領, 朝野之人, 皆恐老奸徑斃於未刑之前, 亟令有司, 按律定罪告宗廟, 自前推鞠省鞠, 雖大祭齋戒之日亦爲故 惶恐敢啓.”

38) 『推案及鞫案』卷2, 癸亥三月以後獄事 上 癸亥 4月 初2日, 아세아문화사, 1983, 45쪽, “傳, 罪人鄭仁弘, 本月初三日行刑時, 百官序立爲只爲, 義禁府傳教爲良如教.”

39) 『承政院日記』1冊, 仁祖 元年 4月 壬戌(3日), “王若曰, 予荷天地之休, 祖宗之靈, 平正內亂, 祇奉慈殿, 剗刮兇穢, 掃灑疆土, 再安宗社, 復正彝倫, 其元惡大慝之助桀爲虐者, 今既顯戮藁街, 虔告廟社, 屬茲神人之咸快, 用敷錫于中外, 凡厥在廷臣僚, 暨耆老民人, 欽聽予言.”

서 폐모론을 일으킨 두 인물에게 인륜을 무너뜨린 책임을 돌리고 인목대비를 윤페로부터 구하여 복위시키는 일이 필연이었음을 강조한 것이었다.⁴⁰⁾

이로써 ‘반정’ 직후 주요대상자의 처형은 일단락되었다. 물론 처벌해야 할 인물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했지만, 이들은 이이첨, 정인홍과의 친소관계와 폐모론에 참여한 정도에 따라 죄목이 분류되었다.⁴¹⁾ 이러한 작업은 정인홍의 처형 및 교서반포를 전후로 행해졌다. 교서에서 폐모론을 인륜과 강상을 무너뜨린 사건으로 규정하여, 인목대비를 구하는 것이 大義를 바로잡는 일임을 강조했다.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서 인조는 ‘반정’의 정당성을 선명히 보여줄 수가 있었다.

폐모론은 인조대와 광해군대의 조정이 구별되는 지점으로 인식되었다. 인조 2년(1624) 8월 경연에서 大司憲 鄭璉은 군자와 소인을 논하는 가운데 “西人이라고 해서 어찌 미진한 일이 없겠습니까마는 폐조 당시에 폐모론에 참여하지 않은 것만은 취해야 할 것입니다.……이이첨에게 아첨하여 섬기던 무리는 결코 조정에 같이 있게 할 수 없습니다.”⁴²⁾라고 했다. 역모에 수차례 연루되었던 仁城君을 처리하기 위해 모인 조정회의에서 大司諫 鄭蘊⁴³⁾은 광해군이 “동기를 죽이지 아니하고 모후를 폐하지 아니하였다면” 인조가 국왕의 자리에 오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⁴⁴⁾

정언은 서인이 폐모론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리를 밝힌 것이며 정은은 국왕으로서 인조의 자격이 폐모론을 조성하거나 영창대군 살해사건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는 데에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들이 한편으로 인사나 형벌 등 인조의 권력행사에 제한이 되기는 했다. 하지만 인목대비를 예우하면서 받들어 주는 한, ‘훈군’ 광해군의 죄를 징치한 국왕으로서의 정당성을 보일 수가 있었다.

한편 인조는 인목대비의 부친인 金梯男에게 불리하게 증언했던 인물들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다. 선왕의 왕비인 인목대비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면 부친인 김제남에게 가해진 역적이라는 오명도 해소되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광해군대 옥사의 타당성 여부를 재평가하는 일과도 관련이 있었다. 錦溪君 朴東亮과 金尙雋의 사례가 그러했다. 박동량은 아들이 선조의 부마였고, 선조의 왕비였던 懿仁王后와는 사촌지간이었다.⁴⁵⁾ 그리고 선조가 영창대군을 돌보아 줄 것을 당부했다는 遺教七臣 중 한 사람이기도 했다. 김상준은

40) 『承政院日記』 1冊, 仁祖 元年 4月 壬戌(3日), “逆魁爾瞻, 奸臣之後, 市井之徒, 妖狐毒螫, 種而成性, 林甫秦檜, 合爲一人,……使元老遯荒, 賢相流竄, 忠良屏跡, 奸孽布列, 納銀拜除, 毒害生民, 僞占五動, 諂上虛號, 蠱昏君之心志, 絜昏君之手足, 其窮兇極惡之狀, 擢髮難悉. 至於大論, 則尤不忍言, 密嗾兇疏, 陰啓昏君, 收議之際, 倡說廷臣, 脅之以死, 誘之以利, 至曰唐廟數罪, 如不可爲. 漢廷廢黜, 臺從寬典, 乃攘臂數慈殿十罪, 使館學通文八方, 噫, 以臣子, 數罪國母, 是可忍也? 以廢黜尙云寬典, 將欲何爲, 幽閉之辱, 過於十年, 神人之痛, 至此而極, 履霜堅冰, 所由者漸矣, 食土含血, 人得以誅之, 逆魁仁弘,……癸丑之獄, 陳筮肆虐, 指大君爲圈中豨豕, 大論之發, 首倡先廢後責之議. 至於哀姜文姜, 且以爲不共戴天之讎, 幽閉之禍, 決於此言, 使綱常敦絕, 人理晦塞, 人之爲惡, 孰云至於此極, 老而不死, 天必有待今日.”

41) 인조대 조정에서는 이이첨 추종여부, 폐모론 참여정도를 가지고 처벌대상과 죄목을 의논했으며[『仁祖實錄』 卷1, 元年 4月 辛酉(2日); 『仁祖實錄』 卷1, 元年 4月 癸亥(4日)] 폐모론에 참여하지 않은 인물들을 대거 추증하거나 加資하는 작업도 병행했다[『承政院日記』 1冊, 仁祖 元年 5月 庚寅(1日)].

42) 『仁祖實錄』 卷6, 2年 8月 辛卯(9日), “曄曰,……雖曰西人, 豈無未盡之事乎. 但當廢朝之時, 不參廢母之論, 此在可取,……若諂事爾瞻之輩, 則決不可同朝也.”

43) 정은이 인조대 조정에 등용될 수 있었던 배경은 金鶴洙,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韓國學中央研究院 박사학위논문, 2008, 74쪽 참조.

44) 『仁祖實錄』 卷7, 2年 12月 壬午(2日), “壬午, 大司諫鄭蘊入來, 上命引見三司長官曰, 仁城君事, 前後少無與知之跡,……蘊曰,……殷鑑不遠, 只在廢朝, 若使廢朝, 雖有昏亂之政, 不殺同氣, 不廢母后, 則雖以殿下之至仁盛德, 不能一朝居此位也.”

임진왜란 당시 지방관과 조도사 등을 역임하면서 선조에게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었으며, 김상용, 김상헌과 사촌지간이었다.⁴⁶⁾ 두 사람 모두 폐모론과는 관계가 없었는데, 박동량은 癸丑獄事(1613) 이후 계속 유배 중이었고 김상준은 조정에서 있으면서도 정청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인조는 이들이 인목대비에게 해를 끼쳤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계축옥사가 진행될 무렵에 이들은 심문을 받게 되어 박동량은 金梯男과 의인왕후 裕陵저주사건과의 관련성을 진술했고, 김상준은 김제남을 ‘逆臣’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인조 원년(1623)에 박동량은 위리안치를 당하게 되었고, 김상준은 먼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이들은 인목대비가 사망한 다음 해인, 인조 11년(1633)이 되어서야 약 10여년간의 유배로부터 풀려날 수가 있었다. 그동안 李元翼이나 李聖求 등이 사면시켜줄 것을 계청했으나, 인조는 그 때마다 거부했다. 박동량의 경우 선조의 遺教를 받은 신하가 도리어 저주사건을 고했다는 점, 단순히 옥사에 참여한 사람의 정상과는 다르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였다.⁴⁷⁾ 김상준도 비슷한 이유로 사면되지 못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김제남을 신원하는 일이 인목대비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과 함께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인목대비의 존호와 대비 칭호를 다시 정하는 사업도 추진되었다. 이 일은 ‘西宮’에서 복위된 이후 ‘慈殿’으로 애매하게 불리고 있던 인목대비의 공식칭호를 분명히 해 둔다는 측면에서 인조가 누구에게서 책명을 받아 즉위했는가와 결부되어 있었다.

인조 원년(1623)에 예조에서는 국왕이 새로 즉위하면 先王의 왕비에게 존호를 올리는 선례가 있었다고 하면서 존호를 정할 것을 건의했으나, 이괄의 난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인조 2년(1624) 8월이 되어서야 인목대비의 존호를 정하는 일이 다시 추진되었다. 議政府와 弘文館, 藝文館에서 회의를 거쳐 인목대비의 존호를 ‘明烈’이라고 하고, 칭호도 ‘대왕대비’라고 정하였다.⁴⁸⁾ 인목대비는 광해군의 ‘왕대비’로서 ‘자전’으로 애매하게 불리고 있다가, 존호와 함께 인조의 ‘祖母’로서 ‘대왕대비’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이었다.

인조는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인목대비를 지원했다. 인조는 壽進宮, 明禮宮, 龍洞宮, 於義宮 등 四宮 중에서 수진궁과 명례궁을 대비전 측으로 귀속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수진궁은 원래 齊安大君家에 속해 있다가 영창대군이 제안대군가의 후사가 되면서 영창대군에게 귀속되었고, 명례궁은 김제남이 맡아 관리하다가 인목대비가 서궁에 유폐된 후 광해군에게 넘어간 상태였다.⁴⁹⁾ 수진궁과 명례궁을 인목대비에게 넘긴 것은 인조의 인목대비에 대한 예우가 단순히 명목에 그치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음을 잘 보여준다.⁵⁰⁾

즉위 이후에 인조는 광해군대 집권세력을 처벌하고, 새로운 조정을 구성할 세력을 등용하는 일에 착수했다. 처벌과 등용에서 ‘반정’의 정당성을 더욱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폐모론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원칙을 내세웠다.⁵¹⁾ 여기에는 폐모론이 일어날 즈음 ‘西宮’으로 격하되었던 인목대비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의미도 있

45) 『韓國系行譜』 地, 潘南朴氏(寶庫社, 1992판, 870-871쪽); 『萬家譜』 2, 潘南朴氏(民昌文化社, 1992판, 987·994쪽)

46) 『韓國系行譜』 天, 安東金氏(寶庫社, 1992, 661·670쪽).

47) 『仁祖實錄』 卷2, 元年 5月 癸巳(4日); 『仁祖實錄』 卷24, 9年 5月 甲午(21日).

48) 『仁祖實錄』 卷6, 2年 8月 庚寅(8日); 『仁祖實錄』 卷7, 2年 9月 戊午(7日), “戊午, 尊王大妃金氏爲大王大妃.”

49) 신명호, 「17세기 초반 明禮宮의 연혁과 기능」, 『朝鮮細時代史學報』 67, 朝鮮細時代史學會, 2013, 271~276쪽.

50) 이와 관련하여 李旭, 『朝鮮後期 魚鹽政策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80-81쪽 참고.

었다. 인목대비의 명예가 회복되고 지위가 분명해질수록, 국왕으로서 인조의 정당성은 더 잘 드러날 수가 있었다.

IV. 復位 이후 인목대비의 조정 내 권력행위

앞서 ‘西宮’으로 격하되었던 인목대비가 여러 측면에서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인목대비는 개인적인 명예회복에 만족하지 않고, ‘자전’의 위상을 활용하여 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 우선 인목대비에게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광해군을 처리하는 문제였다. 인목대비는 ‘반정’ 당일부터 광해군의 처단을 주장했다.

이후 책봉추청문에서도 인목대비는 광해군의 죄를 나열하고 “獨夫의 부자가 죄악이 가득하니 빨리 형벌을 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더하려 했다. 이에 대해 영의정 李元翼, 예조판서 李廷龜, 대제학 申欽 등은 반대의를 표명했다.⁵²⁾ 이원익 등은 인목대비에게 폐위된 임금을 보전하지 못하면 후대 사람들의 책망이 있을 것이며,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는 일에서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이 일을 결코 시행할 수 없다고 간언하기에 이르렀다.⁵³⁾ 계보상으로 볼 때 광해군 또한 인조와 하나의 왕실로 가족이었고, 폐모살제라는 명분으로 거사를 일으킨 만큼 광해군을 죽인다면 이는 다시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과 같았다. 결국 인조는 정국의 안정적인 운영이나 명으로부터의 책봉과정에 도리어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에 광해군의 사안에서는 인목대비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

그러나 인목대비는 이후에도 조정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 이러한 개입은 국왕의 명령체계인 승정원에서 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폐세자 李祘가 강화에서 굴을 파고 도주하려던 사건이 벌어지자, 인목대비는 승정원에 封書を 내려서 2품 이상의 신하들에게 그에 대한 처분을 의논하게 하기까지 했다. 조정에서는 의논한 내용을 먼저 인조에게 보이고 인목대비에게 보고하려 했지만, 인조는 인목대비의 명으로 收議한 것이라며 사양했다.⁵⁴⁾ 이 사건에서는 인조의 결정이 우선되어야 했는데, 인목대비가 갑자기 승정원에 수의를 명한 것이다.

51) 인조 즉위 직후 광해군대 집권 세력의 처벌과 새로운 인물의 등용 기준으로서 폐모론이 중시된 사실은 吳洙彰, 「仁祖代 政治勢力의 動向」, 『韓國史論』 13,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85; 「인조반정과 서인정권에 대한 논란」, 『한국 전근대사의 주요 쟁점』, 역사비평사, 2002; 김한신, 「仁祖代 前半期 왕권과 정치질서 재편(1623~1636)」, 『韓國史學報』 78, 高麗史學會, 2020, 125~128쪽 참고.

52) 『仁祖實錄』卷1, 元年 4月 癸酉(14日), “慈殿下教于政院, 令於奏文中, 添入數款語. ……領相李元翼, 禮判李廷龜, 大提學申欽, 卽日請對, 元翼曰, 慈殿下教, 多有過當之語, 故欲爲稟裁矣. ……至於早加刑章等語, 若入奏聞 則有似仇敵, 恐駭中朝聽聞, 此等奏達之言, 中朝之人, 豈以爲女君獨知之乎? 美德失德, 皆歸聖躬, 可不慎歟.”

53) 『仁祖實錄』卷1, 元年 4月 癸酉(14日), “慈殿下教于政院, 令於奏文中, 添入數款語. ……仍詣閣門外, 啓曰, 外藩奏告天朝, 其文語自有體例, ……至於早加刑章之教, 臣等聚首驚惶, 不知所達, 自古見廢之君, 其罪雖重, 若或終不保全, 則萬世之下, 難免人議, 其爲聖德之累, 豈但歸於慈殿而已, 播諸天朝, 傳之天下, 聞見所及, 必皆驚駭, 而請封大事, 亦恐因此而有誤也. 此一款, 決不可爲也.”

54) 『仁祖實錄』卷2, 元年 6月 庚申(1日).

인목대비는 諺書로 영창대군에게 시호를 내리도록 승정원에 하교했는데, 대간에서는 이를 통상적인 법도(典常)에 어긋난다며 뒷폐단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⁵⁵⁾ 그뿐 아니라 이조판서 吳允謙은 영창대군이 일찍 죽어서 행적이 없기 때문에 시호를 올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했고, 좌의정 尹昉도 이에 반대했다.⁵⁶⁾ 하지만 결국에는 영창대군에게 ‘昭愍’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이 역시 인조의 양해 없이는 성사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인목대비는 ‘諺書 下教’를 멈추지 않았다. 국왕의 御乘馬를 사위인 洪柱元에게 하사하여 대간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대간에서는 인목대비의 월권행위를 방조하는 인조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언서로 하교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간언했다. 이는 대간에서 인목대비가 그간 승정원 등 조정에 직접 하교한 일들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인조는 인목대비를 두둔하면서 이 사안을 불문에 부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자 했다.⁵⁷⁾

인목대비가 이와 같이 행동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여러 측면에서 제약을 받았던 유폐생활에서 벗어나서 ‘慈殿’으로서 자신의 특권을 행사하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국왕의 명령체제인 승정원에 계속 하교했던 일과 같이 인목대비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좀 더 고려해보면, 자신이 조정에서 형식적인 존재로만 남아있지는 않겠다는 뜻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된다.

인목대비의 행태를 인조가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폐생활에서 벗어난 대비를 예우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분명히 인조에게 있었지만, 그녀의 월권행위가 반복될수록 불편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인목대비의 책명으로 즉위가 성립된 상황에서, 인목대비의 언행이 ‘반정’의 명분에 어긋난다며 비판하기는 어려웠다. 인조는 인목대비가 자신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을 눈감아 줄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인조의 권력은 불안정한 국면을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반정’ 이후부터 자신을 추종했던 공신들 사이에서 논공행상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일부 공신들은 중앙관직에서 밀려나는 처지가 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이괄은 도성의 관직에 있다가 평안병사 겸 부원수에 임명되었다. 그 후 모반사건에 연루되어, 순변사 韓明璉과 함께 거병하게 된 것이다. 이괄의 난이 일어나서 인조는 공주까지 파천해야 했다.⁵⁸⁾

그런데 난이 일어나자 이괄이 인목대비를 데리고 왕자를 추대했다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이 때 인목대비의 행방은 일부 신하들 사이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명 사신에게 ‘반정’에 관한 해명을 하기 위해 철산에 머무르고 있었던 행부호군 李安訥은 공조참의 金德誠에게 “자전을 모셨다면 또한 우리 임금의 아들일 것이

55) 『仁祖實錄』卷3, 元年 閏10月 癸巳(7日), “憲府諫院俱啓曰,……永昌雖有英資美質, 而稚年殞折, 善惡無徵, 何以美諡虛號, 追加於三尺之殤乎? 況諺書之下政院, 有妨典常, 此路一開, 後弊難言.”

56) 『仁祖實錄』卷3, 元年 閏10月 戊子(2日); 『仁祖實錄』卷3, 元年 閏10月 壬辰(6日)

57) 『仁祖實錄』卷3, 元年 12月 壬辰(7日), “諫院啓曰, 伏聞慈殿下教, 以御乘馬, 賜永安尉洪柱元, 夫路馬過而式之, 齒之者亦誅, 則敬君及物之義, 不亦嚴乎? 慈殿亦不可擅與人也明矣. 目今, 下嫁之禮, 衣服器用之侈, 倍於平時, 已非祖宗朝節儉省約之道, 況諺書下教, 尤駭瞻聆慈殿, 如有所爲之事, 當告于聖上, 而或有不合事理者, 則聖上怡聲以諫, 冀回悟不陷親於有過之地者, 此聖孝之大者也, 以慈殿塞淵之德, 亦豈不惕然而悔翻然而改乎? 伏望聖明, 以古聖乘訓志意, 群下執法之言, 從容陳達, 還收已下之命, 永寢諺書之教, 以明祖宗家法, 以爲胎厥之謨. 答曰, 先朝以御乘馬, 賜給之時頗多, 頃日之事, 亦何傷乎. 勿煩.”

58) 이괄의 난 발발 직후 인조의 파천과 이괄의 흥안군 웅립에 관해서는 한명기, 「李适의 亂이 仁祖代 초반 대내외 정책에 미친 여파」, 『전북사학』 48, 전북사학회, 2016, 106~109쪽; 박기훈, 「인조대 초반 ‘振武功臣’ 녹훈 과정과 군사 활동」, 『朝鮮時代史學報』 98, 朝鮮時代史學會, 2021, 187쪽 참고.

다”라는 말 때문에 이후에 조정에서 논란이 되었다.⁵⁹⁾ 춘천부사 黃致敬도 “적이 왕자를 옹립하고 자전을 모신다면 인심이 진정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여 이후에 鞫問을 받아야 했다.⁶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더욱 중시되는 인목대비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인목대비의 신변이 이괄 측으로 넘어갈 뻔한 적이 있었다. 이괄의 선봉대가 도성 가까이 접근하자, 인조는 파천을 결정했다. 인조가 먼저 출발하고 나서 얼마 뒤에 인목대비의 행렬도 뒤따랐다. 그런데 崇禮門으로 나서자 인목대비의 가마는 인조의 일행과 떨어져서 楊花津 근처 蠶頭峰(절두산) 쪽으로 향했다.⁶¹⁾ 이때 사위 홍주원만이 인목대비를 수행하고 있었다. 인조는 銅雀으로 건너가는 배 위에서 인목대비 일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⁶²⁾ 신희의 아들인 東陽尉 申翊聖을 보내 인목대비를 합류시키도록 하였다.⁶³⁾

당대의 사건이 전개되는 맥락을 살펴보면, 1624년 1월 하순, 이괄이 승상인 인조에게 반기를 들었고, 興安君 瑤가 太祖의 健元陵과 宣祖의 穆陵, 그 외의 다른 능에 肅拜했다는 사실이 조정 내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⁶⁴⁾ 국왕이 아닌 선왕의 왕자가 국왕의 의사와 무관하게 태조 등의 능을 참배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었으며, 더구나 그 시점이 이괄이 변란을 일으킨 직후였기 때문에 흥안군이 옹립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었다. 인목대비가 이러한 상황을 몰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전부터 仁城君, 仁興君, 興安君 등이 인조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인물로 감시를 받고 있었던 데다가, 이괄의 거사 직후 흥안군이 이러한 행동을 보여 조정과 왕실에서 경계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慈殿’ 인목대비의 처신 일거수일투족은 변란의 진행여부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의정 신희, 그 아들 신익성, 이정구 등이 인목대비의 신속한 출발을 촉구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따라서 인목대비가 양화진 잠두봉 일대에서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인조와 조정의 신하에게는 이괄 측에서 인목대비의 신병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괄 측에서 인목대비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새로운 국왕을 옹립할 때 재가를 얻기 위해서이다. 이런 예측이 신익성 등을 움직이도록 한 것이다.

사실 왕실의嫡子인 永昌大君을 잃은 인목대비가 定遠君의 아들인 인조를 국왕에 적합한 인물로 보았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당시에는 선조의 왕자인 인성군, 인흥군, 흥안군 등이 생존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⁶⁵⁾ 특히 인성군의 경우 이괄의 난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인조의 즉위를 반대하는 세력에게 꾸준

59) 『仁祖實錄』卷5, 2年 3月 辛酉(7日), “安訥設問於座曰,……仍曰, 奉慈殿, 則是亦吾君之子也. 又曰, 未踰年也. 又曰, 楮子島其能免乎. 其餘反正初未盡事, 功臣等命薄事, 賊適立相事, 亂言無倫.”

60) 『仁祖實錄』卷5, 2年 3月 乙亥(21日), “致敬曰,……且曰, 賊若僭號, 則義所當死, 倘賊擁立王子而奉慈殿, 則人心必鎮定矣.”

61) 인목대비의 가마행렬이 승례문을 지나서 낙오하게 된 것은 대비를 수종하는 관원이 강화도로 길을 잘못 안내했기 때문이다. 원래 인목대비를 강화도로 피난시키자는 결정이 있었지만, 『仁祖實錄』卷4, 2年 2月 壬辰(8日), “上聞賊兵已迫, 以慈殿陸行爲憂, 欲幸江都, 議于大臣, 大臣亦請幸江都.” 이정구와 신희의 조언으로 인조가 인목대비와 함께 공주로 피난하기로 계획을 바꾸게 되었다. 『仁祖實錄』卷4, 2年 2月 壬辰(8日), “禮判書李廷龜言於右相申欽曰, 大妃殿, 不可不奉行於行在所, 遂與欽同詣闕庭以啓. 從之.” 바뀐 내용이 인목대비를 수행하는 다른 관원에게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62) 『仁祖實錄』卷4, 2年 2月 壬辰(8日), “上遂登舟, 踞胡床,……上顧問曰, 大妃殿, 已爲渡江乎? 承旨韓孝仲曰, 韓凌謙軍官來言, 大妃殿從官錯認, 取路於楊花渡, 將向江華, 故都監大將, 已使人追告, 而未及陪來矣.”

63) 『仁祖實錄』卷4, 2年 2月 癸巳(9日), “癸巳, 平明, 上猶在舟中, 東陽尉申翊聖奉慈殿, 追到上謁, 上命去胡床, 平坐引見, 初翊聖奉中殿, 行到關王廟前, 始知慈殿誤取楊花之路, 承中殿下教, 追謁於蠶頭江上, 遂奉還大妃殿渡江, 御駕於沙上.”

64) 『仁祖實錄』卷4, 仁祖 2年 2月 丙戌(2日), “左贊成李貴曰,……沉興安君不有國法, 私自拜哭於諸陵之下, 大是可愕事也, 而臺諫只以罷職論啓, 是可謂知君臣大義者哉.”

히 추대 대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⁶⁶⁾ 이 지점에서 양화진 잠두봉에 머무른 인목대비의 속내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조는 오히려 인목대비가 자신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했다. 당장 인조에게는 이괄의 난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다. 인조 측에서는 왕대비의 諭示를 공개했다. 이 글에서는 인목대비가 반정의 공을 언급해 주고 “너희 팔방의 충의로운 지시는 모두 우리 祖宗과 선왕이 가르치고 길러 준 백성이니, 이와 같이 다급하고 어려운 때에 어찌 차마 태연히 구제하지 않겠는가. 너희들은 각자 의병을 일으켜 서둘러 와서 부모를 구하라”⁶⁷⁾며 사대부와 백성들에게 이괄의 군사와 맞서 싸울 것을 독려했다. 이와 함께 인조는 팔도에 하유하여 종묘사직과 인목대비를 지키고 있는 이는 자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면서, 적들이 토벌되어야 하는 당위를 강조했다.⁶⁸⁾

이후에 난이 제압되고 나서 내린 교서에서도 “七廟의 복이 이어져 先靈의 默佑를 입었고, 하루에 세 번 뵈는 예를 갖추어 (자전의) 기뻐하시는 얼굴을 받들게 되었다”⁶⁹⁾고 하여 자신이 선대왕들의 혼령에게서 도움을 받고 있으며, 자전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조는 인목대비가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염려하고 보호하고 있다고 하여 자신이 討逆의 주체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다.

명으로부터의 책봉도 한 번에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⁷⁰⁾ 책봉을 완성시켜달라는 주청문을 보내려면 인조는 다시 인목대비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주청문에서는 소경왕비(인목대비)가 요청하는 형식을 빌어 “첩이……이제 목숨이 실날같이 되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땅속에 묻히기 전에 嗣孫이 책명을 받고 강역을 안정시키는 광경을 볼 수 있게만 된다면,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성상께서는 더 극진하게 공홀히 생각해 주시어 그 동안 列聖이 품어주셨던 큰 덕을 본받으시고 간절한 小邦의 지극한 간청을 들어주소서”⁷¹⁾ 라고 하여, 책봉을 완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결국 명 조정에서는 선조의 妃인 ‘소경왕비’의 주청을 근거로 하여 인조 3년(1625)에 책봉을 완성시켜 주었다. 이와 같이 인조는 인목대비의 권위를 통해서 즉위 초반기의 내외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당장 인목대비를 향한 불만을 드러내기가 어려웠다고 생각된다.

인목대비는 상징으로만 머물러 있으려 하기보다 조정의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목대비는 인조의 권위와 처지를 고려하기보다 조정의 운영체계에 개입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지시하기도 했다.

65) 이와 관련하여 〈부표 1〉 선조의 비빈과 소생 참고.

66) 『承政院日記』 4冊, 仁祖 3年 2月 2日(辛巳), “尹昉曰,……今則逆適·弘耆出於料外, 皆以珙爲言, 今日請爲出置, 乃宗社之至計也.”; 『承政院日記』 4冊, 仁祖 3年 2月 2日(辛巳), “羅萬甲曰, 自上深懲前日之事, 群下孰不知之, 以今日之事勢觀之, 兇徒必以珙爲奇貨.”; 『承政院日記』 9冊, 仁祖 3年 10月 19日(甲午).

67) 『仁祖實錄』 卷4, 2年 2月 甲午(10日), “王大妃下諭中外臣民, 其書有曰, 老婦不幸爲光海所拘囚, 十餘年生死未定, 君臣父子之倫, 數絕久矣. 報賴主上, 英明冠古, 誠孝上天, 倡學義旅, 救予於水火之中, 濟亂於危亡之日, 使予復正位號, 一國臣民, 復見天地日月,……爾八方忠義之士, 皆我祖宗及先王教育之民, 當此急難之日, 豈忍晏然不救, 爾等各出義旅, 急急來救父母.”

68) 『仁祖實錄』 卷4, 2年 2月 乙未(11日), “論諸道曰,……自古亂逆, 何代無之, 稔兇極惡, 未有如此賊者. 上念宗社慈殿, 乃決南遷之計, 而神人共憤之逆, 豈容久貸遊魂.”

69) 『仁祖實錄』 卷4, 2年 2月 己酉(25日) “下教, 諭中外大小人民曰,……七廟綿休, 荷先靈之默佑, 三朝備禮, 奉長樂之歡顏.”

70)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영춘, 앞의 논문, 2011, 131~132쪽 참고.

71) 張維, 『谿谷集』 卷22, 奏本, 請完封典奏本, “妾,……危喘懷懼, 死亡無日, 倘及未填溝壑, 得見嗣孫恭膺冊命, 輯寧方域, 則雖死之日, 猶生之年, 伏願聖慈曲加矜念, 體列聖懷綏之大德, 鑑小邦危迫之至懇.”

그럼에도 인조는 인목대비의 신변을 보호하며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자신이 새 국왕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V. 맺음말

‘반정’으로 즉위한 인조에게 인목대비는 중요한 인물이었다. 인목대비는 선왕인 선조의 왕비로서 명의 책봉을 받았고,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인조에게 책명을 내릴 수 있는 존재였다. 뿐만 아니라 인조가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으려면, 인목대비의 ‘소경왕비’라는 명의로 책봉추청문을 보내야 했다. 그 때문에 즉위 이후 인조는 ‘반정’의 정당성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처벌과 등용에서 폐모론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원칙을 중시했다. 여기에는 폐모론이 일어날 즈음 ‘西宮’으로 격하되었던 인목대비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공식적인 차원에서 인목대비의 존호와 칭호를 다시 정하는 일도 추진되었다. 인목대비는 ‘명렬’이라는 존호와 함께 인조의 ‘조모’로서 ‘대왕대비’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수진궁과 명례궁이 대비전으로 귀속되었다. 그리하여 인조는 인목대비에 대한 예우가 명목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려 했다. 인목대비는 일종의 ‘상장’으로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았다. 몇 차례에 걸쳐 광해군을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인조와 상의 없이 승정원에 직접 지시를 내리는 모습도 보였다. 그럼에도 인조는 이러한 점들을 불문에 부칠 수밖에 없었다.

인조는 즉위 이후 여러 차례 난관에 직면하였고,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선 인목대비를 예우하면서 그로부터 나오는 국왕의 권위를 활용해야 했다. 이괄의 난을 제압할 때에는 인목대비가 인조 자신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렸다. 이 때 인조는 하유와 교서 등을 통해서 종묘사직과 인목대비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역적을 토벌하는 주체로서 자신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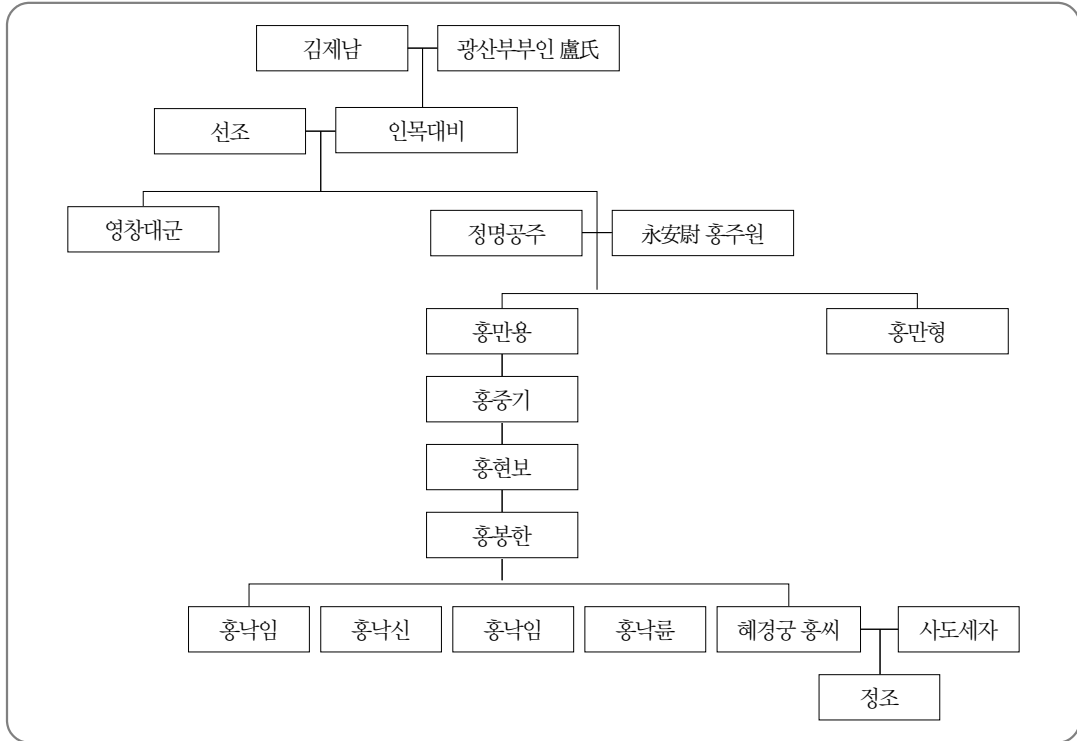
인목대비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전과 이후의 다른 대비와는 다르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인목대비의 위상을 이해하려면 광해군대에 무오정청이 발생하여 서궁으로 유폐되었고, 그 지위와 예우가 사실상 깎아내려갔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한 인목대비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계기가 능양군의 거사였다. 그 때문에 인목대비는 권력자에게 활용되기만 할 뿐 능동적이지 못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나, 그 자신이 선왕인 선조의 권위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靜的이지만 주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태풍의 눈과 같은 존재였다. 광해군대부터 그의 動靜이 政局에 파장을 일으켰고 그 자체가 인목대비의 위상이었던 것이다. 즉위 이후 인조가 내내 고심했던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부표 1〉 선조의 비빈과 소생

비빈	연번	자녀	비고
의인왕후			
인목왕후	1	영창대군 의	
	2	정명공주	
공빈 김씨	3	임해군 진	
	4	광해군 혼	인조 즉위 시 생존
인빈 김씨	5	의안군 성	
	6	신성군 후	
	7	정원군 부	인조 私親. 인조대에 원종으로 추승
	8	의창군 광	인조 즉위 시 생존
	9	정신옹주	인조 즉위 시 생존
	10	정혜옹주	인조 즉위 시 생존
	11	정숙옹주	인조 즉위 시 생존
	12	정안옹주	인조 즉위 시 생존
	13	정휘옹주	인조 즉위 시 생존
순빈 김씨	14	순화군 보	
정빈 민씨	15	인성군 공	인조 즉위 시 생존
	16	인흥군 영	인조 즉위 시 생존
	17	정인옹주	인조 즉위 시 생존
	18	정선옹주	
	19	정극옹주	
정빈 홍씨	20	경창군 주	인조 즉위 시 생존
	21	眞正翁主	인조 즉위 시 생존
온빈 한씨	22	흥안군 계	인조 즉위 시 생존
	23	경평군 릉	인조 즉위 시 생존
	24	영성군 계	
	25	정화옹주	인조 즉위 시 생존
귀인 정씨			
숙의 정씨			

* 참고문헌 : 지두환, 2002, 『선조대왕과 친인척 - 조선의 왕실 14-1 -』, 역사문화, 12~15쪽.

〈부도 1〉 인목대비 관계도



* 참고문헌 : 홍기원, 2004, 『인목대비의 서궁일기』, 민속원, 75~76쪽.

〈참고문헌〉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承政院日記』.

『推案及鞫案』.

『韓國系行譜』.

『萬家譜』.

朴世采, 『南溪集』.

申欽, 『象村稿』.

安邦俊 編, 『默齋日記』.

李元翼, 『梧里集』.

張維, 『谿谷集』.

金天錫, 『明倫錄』 朝鮮黨爭關係資料集 4, 1990.

『서궁일기』, 홍기원(편), 『인목대비의 서궁일기』, 민속원, 2004.

金容欽, 『朝鮮後期 政治史研究 - 仁祖代 政治論의 分化和 變通論』 I, 혜안, 2006.

金鶴洙,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韓國學中央研究院 박사학위논문, 2008.

李旭, 『朝鮮後期 魚鹽政策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李迎春, 『朝鮮後期 王位繼承 研究』, 集文堂, 1998.

지두환, 『선조대왕과 친인척 - 조선의 왕실 14-1 -』, 역사문화, 2002.

한명기, 『광해군 - 탁월한 외교정책을 펼친 군주 -』, 역사비평사, 2000.

계승범, 「계해정변(인조반정)의 명분과 그 인식의 변화」, 『南冥學研究』 26, 慶尙大學校 慶南文化研究院 南冥學研究所, 2008.

김인숙, 「인조 경운궁 즉위의 정치적 의미」, 『韓國人物史研究』 15, 韓國人物史研究所, 2011.

김인숙, 「인조대의 궁중저주사건과 그 정치적 의미」, 『朝鮮時代史學報』 31, 朝鮮時代史學會, 2004.

김한신, 「仁祖代 前半期 왕권과 정치질서 재편(1623~1636)」, 『韓國史學報』 78, 高麗史學會, 2020.

박기훈, 「인조대 초반 '振武功臣' 녹훈 과정과 군사 활동」, 『朝鮮時代史學報』 98, 朝鮮時代史學會, 2021.

송양섭, 「17세기 전반 梧里 李元翼의 정치활동과 정책구상」, 『韓國人物史研究』 5, 한국인물사연구소, 2006.

신명호, 「17세기 초반 明禮宮의 연혁과 기능」, 『朝鮮時代史學報』 67, 朝鮮時代史學會, 2013.

申炳周, 「仁祖代 '豊呈'儀式의 추진과 관련 儀軌 연구」, 『韓國學報』 114, 일지사, 2004.

吳洙彰, 「仁祖代 政治勢力의 動向」, 『韓國史論』 13,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85.

오수창, 「인조반정과 서인정권에 대한 논란」, 『한국 전근대사의 주요 쟁점』, 역사비평사, 2002.

이영춘, 「仁祖反正 후에 파견된 冊封奏請使의 記錄과 외교 활동」, 『朝鮮時代史學報』 59, 朝鮮時代史學會, 2011.

한명기, 「李适의 亂이 仁祖代 초반 대내외 정책에 미친 여파」, 『전북사학』 48, 전북사학회, 2016.

* 이 논문은 2021년 10월 30일에 투고되어,
2021년 12월 22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2년 1월 3일까지 심사하고,
2022년 1월 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King Injo's Domination over Power after His Enthronement
and the Status of Queen Dowager Inmok**

Kim, Hanshin*

This study aims demonstrating how King Injo(인조) had brought up the support from Queen Dowager Inmok(인목대비) and made the best use of it after dethronement of Kwanghaegun(광해군). It reflects the foundation of power that Injo had based on and its trait. Having accomplished the enthronement, Injo tried to signify the past argument in 1618 in which Queen Dowager Inmok had been claimed to be deprived of her title and privileges. He made it a principle to punish severely those who had led the argument. At the same time he also appointed those who had not participated in the argument as his officials. It means the restoration of Inmok's title and privileges indirectly. Additionally, Injo showed his respect to Inmok by giving new titles and some royal estates for her. The more Inmok's position grew to be respected, the more Injo became to get his legitimacy.

[Keywords] King Injo, Queen Dowager Inmok, the argument of degrading Inmok's status, the restoration of Inmok's title

* A lecturer at the Liberal Arts Education Institute, Korea University

